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265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8. 9.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0가소1202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36,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20.부터 2010.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15.경 그 소유의 PC방을 매도하기 위해 지역정보지(C)에 PC방 매각 광고를 냈다.

나. 원고는 이틀 후인 2006. 6. 16.경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E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PC방을 매수하려 한다, E은 F신탁에 매수대금 2억 2,000만 원을 예치해 놓은 상태이다. 우선 감정비 조로 4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 4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평가원 감정사라고 칭하는 G와 공제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라고 칭하는 H, 같은 보험사의 감사과장이라고 칭하는 I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감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6. 6. 16. 280만 원, 같은 달 17. 25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같은 달 20. 668만 원, 1,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그런데 이에 앞서 피고는 2006. 6. 중순경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J’라는 취업정보신문의 광고 중 ‘대출알선’이라는 글을 보고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5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3개의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44만 원을 지급받고 그 계좌의 통장을 쿼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후 D, G, H, I 등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원고가 위 D 등을 형사고소한 결과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그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통장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 합계 3,338만 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9가단44113호)를 제기하였다.

사. 이 법원은 2010. 5. 17. 피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 명의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들을 양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과실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3,3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6. 1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하고,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아. 한편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529호, 2019하면1529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였고, 2020. 3.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22. 5. 28.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20. 4. 16.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3호의 비면책채권(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3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교부할 당시 사회적 지능이 결여된 정신지체 상태에 있었고, 위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기하여 위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채권이 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 사건 선행사건(이 법원 2009가단44113호)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위나 내용, 그리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피고 명의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들을 양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한 점에다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통장 및 현금카드는 이미 원고가 D, G, H, I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들로부터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채권은 면책채권으로, 통상의 채권이 갖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2)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이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를 살펴본다.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생기기 때문에 후소 법원은 위 표준시에서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표준시 이후에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서까지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6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결정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10. 4. 14. 이후인 2022. 5. 28.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표준시 이후에 생긴 법률관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채권이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희근, 판사 박태안, 판사 김동현